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2015년 7월 15일자 인천광역시 조직 개편 및 인천관광공사 설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별 직무 및 소관 사무를 정비 하고자 하며,

나. 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전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는 경우에 위촉 인원 및 기간에 대한 일률적인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및 안전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5년 7월 15일자 인천광역시 조직 개편 및 인천관광공사 설립 등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신설된 재난안전본부를 추가하고, 소방안전본부에서 소방본부로의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며, 문화복지위원회에는 지난 9월 22일 출범한 인천관광공사를 추가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함.

(안 제26조제2항)

나. 위원회에서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는 경우 위촉인원 및 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함. (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05, 팩스 032-440-8762, 이메일 jong09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제2호가목 중 “민원소통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재정기획관”을 “재정기획관, 재난안전본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인천국제교류재단”을 “(재)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인천도시공사 사무 중 관광사업본부”를 “인천관광공사”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아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라목 본문 중 “사항.”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35조 제1항 중 “전문지식을 요하는”을 “전문지식이 필요한”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안전에 한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명 이내의”를 “학식과 경험이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촉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제2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기획행정위원회	2. -----
가. 대변인, 감사관, 투자유치단 (투자유치 사무를 제외한다), <u>민원소통담당관</u> , 규제개혁추진단, 기획조정실, <u>재정기획관</u> , 행정관 리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가. ----- -----, <u>시</u> <u>민소통담당관</u> , ----- ----- <u>재정기획관</u> , 재난안 <u>전본부</u> , ----- -----
나. <u>소방안전본부</u> 및 관련 소방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 <u>소방본부</u> ----- -----
다. ~ 라. (생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마. <u>인천국제교류재단</u>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u>(재)인천인재육성재단</u> 사무에 속하는 사항
바. <u>인천인재육성재단</u> 사무에 속하는 사항	<u><삭 제></u>

현행	개정안
3. 문화복지위원회 가. ~ 나. (생략) 다. <u>인천도시공사 사무 중 관광사업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u> 라. ~ 바. (생략) 사. <u>인천의료관광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u> 아. ~ 카. (생략) 4. (생략) 5. 건설교통위원회 가. ~ 다. (생략) 라. 인천도시공사 사무에 속하는 <u>사항. 다만, 관광사업본부의 사무는 제외한다.</u> 마. (생략) 6. (생략)	3.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u>인천관광공사</u> ----- ----- 라. ~ 바. (현행과 같음) <u>〈삭제〉</u> 사. ~ 차. (현행 아목부터 카목까지와 같음) 4. (현행과 같음) 5.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인천도시공사 사무에 속하는 <u>사항 〈단서 삭제〉</u> 마.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35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사안 또는 <u>전문지식을 요하는</u> 안전의 심사와 관련하여 <u>필요한 경우 해당 안전에 한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명 이내의</u>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u>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며, 해당 안전에 대한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위촉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촉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u> ③ ~ ⑤ (생략)	제35조(전문가의 활용) ① --- ----- <u>전문지식이 필요한</u> ----- ----- <u>학식과</u> <u>경험이 있는</u> ----- -----. ② <u>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촉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u> ③ ~ ⑤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56조(위원회의 설치) ○ 제58조(위원회의 권한) ○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 국회법 ○ 제43조(전문가의 활용)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58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국회법

제43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